

Myanmar Investment Law

[미얀마 투자법]

Disclaimer

This unofficial Korean translation is made from the Myanmar Investment Law (The Pyidaungsu Hluttaw Law No. 40/2016, 18 October 2016) available at the website (<http://www.dica.gov.mm>) of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ootnotes were used for translations that need further clarifications in the context.

Please be advised that this unofficial Korean translation of Myanmar Investment Law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and reference purpose only. The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or opinion of any kind and does not have any legal value. Your use of or reference to the document or translation is at your own risk, and you should seek legal and other professional advices before using the document or translation.

본 미얀마투자법 국문번역문은 미얀마 연방공화국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의 홈페이지(<http://www.dica.gov.mm>)에 공표된 미얀마 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 The Pyidaungsu Hluttaw Law No. 40 / 2016, 18 October 2016)의 미얀마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문맥상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로 각주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본 한글번역본은 미얀마투자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미얀마투자법

연방의회 법률 No. 40/2016

(2016년 10월 18일)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는 이로써 본 법을 입법한다.

제1장

명칭 및 정의

1. 본 법은 미얀마 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이라고 명명된다.
2. 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연방(Union)”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을 말한다.
 - (b) “대통령(President)”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을 말한다.
 - (c) “연방정부(Government)”는 미얀마 연방공화국의 연방정부(Union Government)를 말한다.
 - (d) “기획재정부(Ministry)”는 연방정부의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를 말한다.
 - (e) “투자위원회(Commission)”는 본 법에 따라 구성된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을 말한다.
 - (f) “위원(Member)”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투자위원회 구성 위원을 말한다.
 - (g) “집행국(Commission Office)”은 투자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을 말한다.
 - (h) “간사(Secretary)”는 집행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위원회의 간사를 말한다.
 - (i) “투자제안서(Proposal)”란 투자자가 제36조에 명시된 사업에 대한 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투자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말한다.
 - (j) “투자허가(Permit)”란 투자자가 제출한 투자제안서에 대하여 투자위원회가 이 투자제안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명령(order)을 말한다.

- (k) “양여신청(Endorsement application)”¹은 제12장에서 정한 토지사용권 신청 및 제18장의 제75조,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한 면제 및 감면을 신청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법정 양식 및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l) “양여허가(Endorsement)”는 투자자가 제출한 양여신청에 관하여 투자위원회가 양여신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명령(order)을 말한다.
- (m) “내국인(Citizen)”²은 연계시민³ 또는 자연시민⁴을 말한다. 이에는 순수하게 내국인에 의해 투자된 기업을 포함한다.
- (n) “내국인투자자(Myanmar Citizen Investor)”는 미얀마에 투자한 내국인을 말한다. 이에는 미얀마 회사법⁵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된 회사, 지점 및 기타 기업체를 포함한다.
- (o) “외국인투자자(Foreign investor)”는 미얀마에 투자한 자 중에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에는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된 외국회사, 외국 지점 및 기타 기업체와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체를 포함한다.
- (p) “투자자(Investor)”는 본 법에 따라 미얀마 연방 내에 직접 투자를 하는 내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를 말한다.
- (q) “투자(Investment)”란 본 법에 따라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 동 정의에는 제40조에 규정된 투자를 포함한다.
- (r) “직접 투자(Direct investment)”란 투자자가 본 법에 따라 미얀마 연방 내에서 한 자산의 투자로서, 투자자가 통제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¹ 역자주. 영문 번역본에서는 “양여”를 Endorsement라 칭하고 있으며 양여를 신청하는 것은 Endorsement Application으로 적고 있습니다. “양여”란 투자자가 토지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여신청”이란 토지사용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MIC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² 역자주. 미얀마 1982년 국적법은 내국인(미얀마 국적인)을 Full citizens, Associate citizens, Naturalized citizens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Full citizens는 ‘1823년 이전에 미얀마에 거주하였던 자를 직계존속으로 둔 자, 또는 출생시 부모가 미얀마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미얀마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내국인 기준을 충족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미얀마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에 즉시 미얀마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³ 역자주. Associate citizens을 번역한 것으로, 미얀마 1982년 국적법에 따라 ‘1948년 국적법에 따라 미얀마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⁴ 역자주. Naturalized Citizen을 번역한 것으로, 미얀마 1982년 국적법에 따라 ‘1948년 1월 4일 이전에 미얀마에 거주하였던 자와 1982년 이후에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⁵ 역자주. Myanmar Companies Act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s)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란 외국인투자자의 미얀마 연방 내 직접 투자를 말한다.
- (t) “기업(Enterprise)”은,
 - (1)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되거나 설립된 회사, 신탁(trust), 조합(partnership),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합작회사 및 기타 협회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한다.
 - (2) 현행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⁶ 기업들의 지점(branch office)를 말한다.
- (u) “자유통용화폐(Freely Usable Currency)”는 국제통화기금 협약(Article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제30(f)조에 정의된⁷ 국제상거래의 지급방법으로 통용되는 협약국의 화폐로서 주된 외환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 (v) “면제 및 감면(Exemption and Relief)”은 투자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투자자의 신청을 심사한 후 투자허가나 양여허가를 취득한 투자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소득세, 관세 및 기타 내국세의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의미한다.
- (w) “조치(Measures)”는 정부부처,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가 자신의 권한 하에서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절차, 결정 및 행정관행⁸ 등을 말한다.

제2장

목적

3. 본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자연환경 및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투자사업⁹을 육성함으로써 연방과 내국인의 이익을 증대
- (b) 법률에 따른 투자자 및 투자 보호
- (c) 내국인의 고용기회 창출

⁶ 역자주. 문맥상 위 (1)항이 정한 기업들의 지점(branch)을 의미합니다.

⁷ 역자주. 동 협약 제30(f)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freely usable currency means a member's currency that the Fund determines (i) is, in fact, widely used to make payment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ii) is widely traded in the principal exchange markets.

⁸ 역자주. laws, rules, regulations, procedures, decision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를 번역한 것입니다.

⁹ 투자사업은 투자를 위한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 (d) 인적자원의 개발
- (e) 생산, 서비스, 무역 분야의 역량 증대
- (f) 기술, 농업·축산, 산업 분야의 발전
- (g)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포함한 모든 전문직업 분야의 발전
- (h) 내국인의 국제사회 협력 활성화
- (i) 국제 표준에 부응하는 기업 활동 및 투자사업의 발전

제3장

본 법의 적용범위

- 4. 본 법은 발효일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연방 내의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은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투자관련 분쟁 또는 운영이 중단된 투자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본 법은 정부부처 또는 정부기구가 채택 및 시행한 기존의 투자 관련 조치에도 적용된다. 단, 본 법 제21장(일반적 예외사항) 및 제22장(국가 안보 예외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예외로 한다.

제4장

투자위원회의 구성

- 6. 투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위원장: 연방정부 인사 중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b) 부위원장: 연방정부가 임명
 - (c) 위원: 연방부처(Union Ministries), 정부부서 및 정부기구의 인사 중 적절한 자, 민간부문의 전문가, 그 외 전문가 및 적절한 권위자 중 연방정부가 임명
 - (d) 간사: 집행국의 장(長)(Head of Commission Office)
- 7. 연방정부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포함하여 최소 9인 이상의 홀수로 투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보상 및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9. 간사를 제외한 위원들의 임기는 선출된 연방정부의 임기와 동일하다. 간사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위원은 2번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11. 선출된 연방정부는 정권 취임 2개월 내에 투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야 한다.
12. 집행국의 장은 투자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겸임하며, 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국 소속의 직원에게 서면으로 특정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위 서면에 특정된 업무만 수행한다. 업무에 관한 서면 지시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제5장

위원의 사임, 임기 만료, 그리고 궐위시의 임명

14. 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중 자발적으로 사임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사임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위원장 외 투자위원회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임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a) 해당 위원이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법률에 따라 구성된 의료전문진이 진단하였을 때
 - (b) 사망하였을 때
 - (c) 형사범죄를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
 - (d)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
 - (e)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17. 연방정부는,
 - (a) 사임, 해임, 사망 외 기타 사유로 인한 위원의 궐위 시에는 본 법 및 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b) 투자위원회 위원장의 궐위 시, 차기 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부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임명한다.
18. 위원들은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기 투자위원회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제9조에 규정된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궐위 시에 임명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따른다.
20. 간사는 투자위원회와 관련된 일상 업무, 행정 업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1. 투자위원회에 제출된 투자제안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사실을 명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개된 내용은 투자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고, 해당 위원은 그 제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결정, 논의, 조치에도 참가할 수 없다.
22. 투자위원회에 제출된 양여신청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이 사실을 명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개된 내용은 투자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고, 해당 위원은 그 양여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투자위원회 절차에도 참가할 수 없다.

제6장

투자위원회의 책무와 권한

23. 투자위원회는 본 법에 따른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24. 투자위원회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 (a) 연방 내의 투자 촉진 활동 수행
 - (b) 투자자 및 연방에 대한 잠재 투자자들과 조율하는 주무부처 역할 수행

- (c) 투자자들 및 투자의 원활한 유입 지원
- (d) 투자사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경제 목표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연방 부처 및 주·지방 정부에 투자 정책 조언
- (e) 집행국의 직원들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및 지침 제시·공표
- (f) 투자위원회의 활동 및 역할에 대하여 대통령 및 연방정부에 분기별 보고
- (g)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활동의 완료 여부 및 진행 경과에 대하여 연방정부 부를 통하여 연방의회에 연간 보고
- (h) 네피도 위원회(Naypyidaw council) 및 지방·주 정부와 협의 하에, 연방 및 지방·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사업활동의 종류, 천연자원, 고용기회 창출 등을 고려하여 연방정부가 승인하는 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 권한 분배
- (i) 내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연방정부에 대한 조언
- (j) 천연자원 또는 문화유산을 권한 없이 소유, 교환, 은닉한 투자자에 대하여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조치
- (k) 투자사업이 본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고, 명령, 지시 및 절차에 포함된 사항 및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여 수행되고 있는지 심사. 투자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본 법에 따라 조치
- (l) 면제 및 감면, 투자 제한사업에 관한 검토 및 이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
- (m) 연방정부가 수시로 위탁하는 책무의 수행

25. 본 법에 따른 책무의 수행을 위하여 투자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투자 장려 사업분야 및 투자가 제한/금지되는 사업 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공고의 공표
- (b)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방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사업,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투자사업, 자연환경 및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의 종류 결정
- (c) 투자위원회에 제출된 투자자의 투자제안서가 연방에 이익에 부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허가를 발급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허가의 발급 거부
- (d) 투자위원회에 제출된 투자자의 양여신청을 검토한 후,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비하고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여허가 발급
- (e) 투자자가 투자허가 또는 양여허가의 연장,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사 후에 승인 또는 거부

- (f) 필요한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서류나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
- (g) 투자자가 투자허가 또는 양여허가를 받기 위하여 투자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왜곡하여(misrepresent) 작성되었거나, 투자자가 투자허가 또는 양여허가상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른 조치
- (h) 투자자가 본 법에 따른 조세의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 후에 혜택 부여
- (i)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조세의 면제 및/또는 감면, 또는 양자 모두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활동의 종류 지정
- (j) 정부부처, 정부기구, 기타 기구 및 투자자에게 본 법에 따른 투자위원회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원 및 정보 요청
- (k) 본 법이 정한 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실시
- (l) 투자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건설기간이나 준비기간에 대한 심사 및 승인
- (m)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에, 관세청이 정한 임시 수입 절차(temporary importation procedures)에 따라 해외에서 기계 및 장비를 임시 수입하는 것에 대한 면제 및 감면 혜택에 관하여 심사 및 승인
- (n) 본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쟁해결 절차¹⁰가 진행되기 이전에, 분쟁 검토, 원인 발견, 분쟁에 대한 대응 및 조사, 분쟁에 따른 손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26. 투자위원회는 등록수수료를 포함한 기타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27. 투자위원회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committee)와 실무기구(bodies)를 둘 수 있다.

28. 투자위원회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¹⁰ 역자주. 중재나 소송 등의 구체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의미합니다.

투자위원회 회의

29. 투자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기로 개최된다.
 - (a) 정기회의: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
 - (b) 임시회의: 필요에 따라 개최
30. 위원장은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31. 투자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32. 투자위원회 회의는 출석 위원 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자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위원은 출석한 위원들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반대, 거부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다.
33. 투자위원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기타 기구의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34. 투자위원회는 투자자 및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을 하거나 논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35. 위원들은 특별 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근접한 정기회의에서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투자제안서의 제출

36. 다음 사업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투자위원회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투자허가를 받은 후에 투자하여야 한다.
 - (a) 연방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사업
 - (b)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투자사업

- (c)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
- (d) 연방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투자사업
- (e) 연방정부가 투자제안서 제출¹¹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한 투자사업

제9장 양여신청 제출

- 37. 투자자는 제36조에 열거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투자위원회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¹² 그러나 투자자가 제12장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및 제75조, 77조 및 제78조에 규정된 면제 및/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서식을 갖추어 집행국에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 38. 투자자는 양여신청 시에 투자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련기관이 발급한 모든 승인, 면허,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9. 투자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신청된 양여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비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보완 후 다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투자사업의 지정

- 40. 투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기업
 - (b) 동산 및 부동산과 이와 관련된 권리, 현금, 질권, 저당권, 유치권, 기계, 장비, 부품, 및 관련된 도구
 - (c) 회사의 지분, 주식, 채권
 - (d) 기술적 노하우, 발명을 위한 특허, 산업 디자인,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포함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른 지적재산권

¹¹ 역자주. 투자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¹² 역자주. 제36조에 열거된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그 외의 투자사업은 투자허가를 득할 필요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e) 금전채권 및 금전적 가치를 지닌 계약상 이행청구권 일체
- (f) 일괄도급,¹³ 건설, 관리, 생산, 또는 수익 공유 계약을 포함한 계약상 일체의 권리
- (g) 천연자원에 관한 탐사, 탐광, 채굴권을 포함하는 관계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

41. 다음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투자금지 항목으로 규정한다.

- (a) 유해·유독한 폐기물을 연방에 반입하는 사업
- (b) 해외에서 시험 중이거나 사용·재배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기술, 의약품, 동식물, 기구를 반입하는 사업. 다만, 연구 개발 목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c) 연방 내 전통문화 및 소수민족의 관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d) 공공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e)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사업
- (f) 현행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제조 및 서비스 사업

42. 다음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투자제한 항목으로 규정한다.

- (a) 연방정부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b) 외국인투자자에게 제한되는 사업
- (c) 내국인 또는 내국인 소유회사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업
- (d)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허용되는 사업

43. 투자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투자가 장려되는 사업분야 및 제42조에 따른 투자 제한 사업분야에 대한 공고를 공표하여야 한다.

44. 투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제42조상 사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 수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45. 투자위원회는, 제44조에 따른 검토 및 수정을 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체결한 국제 무역 및 투자 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 정부부처, 정부기구의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¹³ 역자주. 턴키(turnkey) 계약을 의미합니다.

46. 투자위원회는, 연방과 내국인의 안보, 경제, 환경 및 국가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사전에 연방정부를 거쳐 연방의회에 보고한 후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장 투자자에 대한 대우

47. 연방정부는 투자자에 대하여,
- (a)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확장, 관리, 운영, 매각 또는 처분에 대하여, 법률, 규정 및 공고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인보다 불이익하게 대우하여서는 안 된다.
 - (b)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설립, 인수(acquisition), 확장, 관리, 운영, 매각 또는 처분에 대하여 다른 국적의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 직접 투자와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c) 위 (b)항은 다음의 사유에 따른 우호적인 조치, 이익, 또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¹⁴
 - (1)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경제연합 및 국제조약의 체결에 따라 구성된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경제연합
 - (2) 국제조약, 양자·지역·국제 협약, 지역 국가간의 협약 또는 협의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 다른 국가간 협약이나 협의 또는 조세 관련 (일부 또는 전부) 약정에 따른 특혜
48. 연방정부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공정,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보장한다.
- (a) 투자자 및 그의 직접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 또는 결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
 - (b) 투자자 및 그의 직접 투자에 부여된 면허, 투자허가 및 양여허가의 조건에 관한 변경 또는 관련 조치에 대하여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불복(appeal)할 수

¹⁴ 역자주. (c)항이 정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들 간에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있는 권리

49. 본 장의 조항들은 제76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장 토지 사용권

50.

- (a) 본 법에 따라 투자허가 또는 양여허가를 취득한 투자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소유 사유지·건물, 정부가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정부부서/정부기구가 소유하는 토지·건물을 장기간 임차할 수 있다. 내국인투자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토지·건물상에 투자할 수 있다.
- (b) 외국인투자자는 연방정부, 정부기구, 또는 내국인 사유지·건물 소유자로부터 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 또는 양여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기산하여 최초 50년 동안 토지나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
- (c) 외국인투자자는, (b)항에 따른 임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차 기간을 10년씩 2회 연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 (d) 투자자는 등록법(Registration Act)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등록사무소(Registrar Office of Deeds and Assurances)에 등록하여야 한다.
- (e) 연방정부는 내국인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권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f) 투자위원회는, 연방 전체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를 거쳐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경제가 낙후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본 법에 따른 토지의 임차 또는 사용 기간보다 장기간을 정하여 토지 임차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장 직원 및 근로자 고용

51. 투자자는,

- (a) 국적에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자를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상급 경영인, 기술·운영 전문가,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다.

- (b) 내국인이 경영인, 기술·운영 전문가, 고문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내국인에게 필요한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c)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는 내국인만을 고용하여야 한다
- (d) 내국인 및 외국인 숙련 근로자, 기술자,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시행 중인 노동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 고용계약상 고용 조건을 규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기타 고용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행 중인 노동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임금, 휴가, 공휴일, 초과수당, 재해보상, 사회보험, 사회복지, 기타 근로자에 관한 보험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f) 사용자간, 근로자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자와 기술자 또는 직원간의 분쟁을 시행중인 관계 법령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제14장 투자 보장

- 52. 연방정부는 법률에 따라 수행되는 투자를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투자의 중단을 초래하는 직간접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다만, 다음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a) 연방 및 내국인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b)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 (c)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 (d) 신속히 공정하고(fair) 적정한(adequate) 보상을 할 경우.

- 53.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결정할 때에는 수용 당시의 시장가치가 고려되어야 하고, 보상액은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응해야 한다. 그러나 보상액 결정 시에는 투자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공정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투자의 현재 및 과거 조건, 투자사업이나 자산을 수용하는 사유,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 투자사업이나 자산을 수용하는 목적, 투자기간 동안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 및 투자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54. 제21장 및 제22장¹⁵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연방정부가 경제 균형 및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비차별적 조치는 본 장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55. 투자자가 어떠한 조치나 일련의 조치들이 간접 수용에 해당하고 제52조에 규정된 요건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연방정부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건별로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a) 해당 조치가 의도적으로 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 (b) 해당 조치가 연방정부의 구속력 있는 사전 약정, 계약, 면허 또는 기타 투자자에 우호적으로 발급된 법률 문서에 위반하는지
 - (c) 정부의 조치 및 해당 조치의 목적이 제52조 (a)항이 정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제15장 자금의 이체

56. 외국인투자자는 본 법에 따라 수행된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허용된다.
- (a) 미얀마중앙은행의 자본금 계정 규정(capital account rules)에 따른 자본금
 - (b) 본 법에 따른 투자와 관련한 수익, 자본이익(capital gains), 배당금, 로열티, 저작권료, 라이선스료, 기술지원 및 경영관리 수수료, 지분 및 기타 소득
 - (c) 투자 및 투자와 관련하여 소유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청산하여 수취한 대금
 - (d) 대출계약을 포함한 계약상 지급된 대금
 - (e) 투자관련 분쟁의 해결에 따라 수취한 소송금
 - (f) 투자 또는 자산의 수용이나 몰수에 따른 보상금 및 기타 수령금
 - (g) 연방 내에 적법하게 고용된 외국인 직원의 소득 및 기타 보수
57. 대출금의 송금 또는 대출금의 수령은 관련 규정·규칙에 따라 미얀마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¹⁵ 역자주. 제21장 일반적 예외사항 및 제22장 국가 안보 예외사항을 의미합니다.

58. 내국인투자자들은 본 법에 따라 수행된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사유의 자금을 자유롭게 즉시 이체할 수 있다.
- (a) 제3자에 대한 로열티, 라이선스료, 기술지원 및 경영관리 수수료, 이자 대금 지급
 - (b) 대출계약 등 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따른 지급
 - (c) 법원 판결, 중재 판정, 합의 등을 포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지급하는 대금
59. 자금의 이체는 관련 세법에 따라 해당 자금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한 후에 비로소 허용된다.
60. 근로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법¹⁶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의 잔여소득을 추가 부담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은 연방에 설립된 외국환거래 면허를 보유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1. 외국인투자자가 외국환관리법¹⁷상 자본금 계정 또는 당좌예금 계정 분류에 해당하는 자금을 본 법 제56조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연방에 설립된 외국환거래 면허 보유 은행을 통하여 자유통용화폐로 이체할 수 있다.
62. 연방정부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금에 관하여 자금의 이체를 중단시키거나 보류할 수 있다.
- (a) 파산 또는 채권자 권리 보호
 - (b) 형사 범죄와 관련된 자금 및 범죄로 인한 수익
 - (c) 법률의 집행이나 금융규제당국 지원 목적의 재무 보고 또는 이체 기록의 보존
 - (d)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 따른 명령 또는 판결의 집행
 - (e) 과세
 - (f) 사회보장기금, 연금, 근로자를 위한 강제 저축 제도(compulsory savings schemes)

¹⁶ 역자주. Income Tax Law를 의미합니다.

¹⁷ 역자주. Foreign Exchange Management Law를 의미합니다.

(g)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3. 연방정부는 투자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연방 내 투자에 사용되는 자본, 비용 및 대출금을 해외에서 이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64. 연방정부는 중대한 국제수지 적자 또는 대외적 금융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및 기타 국제적 의무(international obligations)에 따라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이나 이체를 제한하거나 또는 그 제한을 지속하여 가할 수 있다.

제16장 투자자의 의무

65. 투자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a) 투자자는 연방의 관습, 전통, 그리고 각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 (b) 투자자는, 투자 실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 개인기업,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 (c) 투자자는 발급된 특별 면허, 허가, 사업등록증 등에 명시된 규정 및 조건(본 법과 미얀마 법률에 따른 시행령, 절차, 공고, 명령, 지침에 명시된 조건 및 조세 관련 의무를 포함함)을 준수해야 한다.
 - (d) 사업의 성격 또는 필요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 정부부서, 정부기구가 발급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자는 해당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e) 투자자는, 허가 내용 및 원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천연광물자원, 유물, 또는 골동품이 임차 토지 또는 사용권이 있는 토지의 지상·지하에서 발견된 경우, 즉시 이를 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위원회가 허가할 경우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투자위원회가 허가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투자자가 선정한 대체 토지로 사업을 이전하여야 한다.
 - (f) 투자자는 투자위원회의 허가 없이, 임차 토지 또는 사용권이 있는 토지의 자연적 지형이나 고도를 현저하게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 (g) 투자자는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미얀마 법률, 규정, 절차, 및 국제 모범규준(best standards practiced internationally)을 준수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

환경을 훼손, 오염, 손상시키거나,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 (h) 투자자는 투자허가 및 양여허가에 따른 투자와 관련된 회계장부, 연간 재무제표 및 기타 필요한 재무 기록을 국제사회 및 미얀마에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i) 근로계약 위반, 투자사업 종료, 투자사업의 매각 및 양도, 투자의 중단, 또는 인력 감축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완료한 후에야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
- (j) 일정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일시 중단할 경우, 투자자는 관련 법률, 규정, 절차, 및 지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한 급여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k)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 장애, 질병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근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l) 투자자는 투자사업에 고용된 외국인 전문가, 감독인 및 그 가족들이 시행중인 법률, 규정, 명령, 지시 및 미얀마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m) 투자자는 현행 노동관련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n) 투자자는 법률에 따라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제소될 수도 있다.
- (o) 투자자가 허가된 투자 범위를 벗어나 벌목, 천연자원의 채굴 등의 행위를 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적 손해를 입힐 경우, 해당 투자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단, 투자허가 또는 양여허가 범위 내의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p) 투자위원회로부터 조사 실시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위원회가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장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q) 투자자는 환경보전법¹⁸ 및 그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사회영향평가 이전에 투자허가 및 양여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사업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및 사회영향평가에 필요한 분석 결과와 평가 조건을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¹⁸ 역자주.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를 의미합니다.

66. 투자위원회는 제65조 (q)항에 따른 분석 결과에 따라 투자사업의 수행을 계속하게 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67. 투자자는 본 법의 효력 발생일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68. 허가 기간보다 조기에 사업을 중단한 투자자가, 투자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관련 조세의 면제 및/또는 감면 혜택을 받아 해외로부터 수입한 기계, 장비, 자동차, 기타 물품을 매각, 재수출 및 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제 및/또는 감면 혜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9. 투자위원회로부터 투자허가 또는 양여허가를 받은 후, 투자자는 관련 정부부처 또는 정부기구와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투자를 수행하여야 한다.
70. 투자자가 제69조에 따른 계약을 연장, 변경하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71. 투자자는 투자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에 관한 건강평가, 문화유산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회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72. 투자허가나 양여허가를 받은 투자사업에 관하여, 투자자가 투자 기간 동안 사업을 전대(sub-lease), 담보(mortgage)로 제공하거나, 주식 또는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 사실을 투자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장

보험

73. 투자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계약은 연방 내 영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한다.

제18장

면제 및 감면

74. 저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연방의 개발을 도모하고 지방 및 주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투자자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신청한 경우 투자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심사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세 면제 및/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75.

- (a) 조세 면제와 관련하여, 투자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가장 저개발된 (least-developed) 지역을 제(1)구역, 중간 수준(moderately developed)으로 개발된 지역을 제(2)구역, 적절한 수준(adequately developed)으로 개발된 지역을 제(3)구역으로 지정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제(1)구역에 대한 투자사업에는 사업 개시연도부터 연속하여 7년간, 제(2)구역에 대한 투자사업에는 5년간, 제(3)구역에 대한 투자사업에는 3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b) 투자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각 지방 및 주의 개발 수준에 따라 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 (c) 소득세 면제 혜택은 투자위원회가 투자촉진 사업분야로 지정하여 공고로 공표한 분야에만 부여된다.¹⁹

76. 제11장 ‘투자자에 대한 대우’ 규정에 부가하여, 연방정부는 내국인투자자 및 내국인 소유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자금 지원, 역량 강화 및 훈련 지원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내국인 소유 기업이 운영되거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더 많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77. 투자자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신청한 경우 투자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심사한 후 관세 및 기타 내국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a)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고 투자사업의 건설기간 또는 준비기간 동안 실제로 필요하여 수입되며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기구, 기계부속품, 부품, 건설 자재에 부과되는 관세 및/또는 기타 내국세의 면제 또는 감면
- (b) 수출용 제품 생산 목적의 수출지향적 투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원재료 및 반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또는 기타 내국세의 면제 또는 감면

¹⁹ 역자주. 제(1)구역에서 투자사업을 하더라도 투자위원회가 공고로 정한 투자촉진 사업분야로 지정되지 않으면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 (c) 수입된 원재료 및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된 제품의 물량에 따라, 해당 수출용 제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 및 반제품에 부과되었던 관세 및/또는 기타 내국세의 환급(reimbursement)
- (d) 허가기간 동안 원래의 투자사업이 확대되어 투자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투자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고 확대된 사업의 수행에 실제로 필요하여 수입되며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기구, 기계부속품, 부품, 건설 자재에 부과되는 관세 및/또는 기타 내국세의 면제 또는 감면

78. 투자자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신청한 경우 투자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a) 투자허가 또는 양여허가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사업으로부터 취득한 수익을 1년 이내에 해당 투자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종류의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수익²⁰에 대한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 (b)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건물 및 자본재에 대하여, 규정된 사용연수보다 짧은 기간으로 사용연수를 정하여 상업적 생산 개시연도부터 상각을 시작하여 산정된 감가상각액을 법인세 사정(income tax assessment) 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권리
- (c) 연방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하여 연방 내에서 수행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투자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권리

79. 외국인투자자는 연방 내 거주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80. 제75조, 제77조, 제78조에서 규정한 면제 및 감면 외에 조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세 법령에 의한다.

81.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에서 규정한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²⁰ 역자주. 재투자된 금액 상당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제19장 분쟁의 해결

82. 본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투자위원회는 투자관련 분쟁에 대하여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여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및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분쟁조정 방안(grievance mechanism)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83. 투자자와 연방간 또는 투자자들간의 분쟁이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되기 이전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4. 투자관련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a) 분쟁해결 방법이 관련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쟁은 현행 연방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b) 관련 계약에 분쟁해결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0장 행정제재

85. 투자위원회는,
(a) 본 법 및 본 법에 따라 공포된 시행령, 시행규칙, 절차, 공고, 명령, 지시의 제 규정 및 투자허가 및 양여허가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한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한 행정제재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견책(Censure)
(2) 일시적인 사업의 정지
(3) 일시적인 조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의 중단
(4) 투자허가 및 양여허가의 철회
(5) 장래에 투자허가 또는 양여허가 발급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등재
(b) 투자위원회는 (a)항에 따른 행정제재 부과 결정 이전에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위 행정제재 부과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c) 투자위원회가 (a)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 결정문에 그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86.

- (a) 투자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위원회의 제85조에 따른 행정제재 결정일로부터 60일 내에 연방정부에 불복할 수 있다.
- (b) 연방정부는 투자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거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 (c) 연방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종국적이다.

87. 투자자가 투자위원회, 관련 정부부처, 정부부서, 정부기구에 투자제안서, 회계서류, 계약의 증거서류, 재무 및 고용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정보를 은폐하였음이 인정될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당해 투자자는 형사절차에 따라 기소된다.

88. 투자자가 본 법을 위반하거나, 제41조의 금지되는 투자사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본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기소된다.

제21장

일반적 예외사항

89. 연방정부는 다음의 경우에 합리적인 비차별적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본 법의 어떠한 규정도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a) 공공도덕을 보호하거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b) 인간 및 동식물의 수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 투자자, 예금자, 금융시장 참여자, 보험가입자, 보험금청구자, 또는 금융기관에 신탁한 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 (d) 금융기관의 안전, 건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 (e) 연방정부 금융 시스템의 성실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 (f) 투자자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조세 사정 또는 조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 (g) 예술, 역사, 고대 국보 또는 문화유산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h) 국내 생산 또는 소비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제22장
국가 안보 예외사항

90.

- (a) 연방정부는 필수적인 국가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강행할 수 있으며, 본 법의 어떠한 규정도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b) 본 법의 규정은 연방정부가 중대한 국가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1) 무기, 탄환 거래와 관련된 행위 및 군부 또는 기타 방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운송되는 기타 물품에 관하여 취하는 조치
 - (2) 전시상황 또는 국제정세에 따른 비상상황 하에서 취하는 조치

제23장
기타 사항

- 91. 본 법의 규정이 연방이 비준한 국제조약이나 협약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92. 본 법이 공포된 후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본 법의 내용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법(Pyidaungsu Hluttaw Law No. 21/2012)에 따라 공포된 시행령이 계속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 93. 미얀마 외국인투자법(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Law No. 10/1988), 외국인투자법(2012, Pyidaungsu Hluttaw Law No. 21), 또는 미얀마 내국인투자법(2013, Pyidaungsu Hluttaw Law No.18)에 따라 투자위원회로부터 취득한 투자허가는 해당 투자허가에 기재된 투자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 94. 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시행 중인 다른 법률의 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95. 본 법에 의해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투자위원회, 소위원회나 실무기구 구성원, 또는 공무원이 선의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절차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96. 투자위원회 위원 및 집행국의 직원은 본 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 과정에서 부패방지법²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97. 투자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정보를 본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98. 본 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한 결정은 최종적이고 종국적이다. 단 제85조에 따른 행정제재 부과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9. 투자위원회가 본 법이 정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는,
 - (a) 집행국의 책무를 이행하고,
 - (b)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투자위원회의 예산을 부담한다.
100. 본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 (a) 기획재정부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령, 시행규칙, 절차, 명령, 공고 및 지시를 제정할 수 있다.
 - (b) 투자위원회는 명령, 공고, 지시 및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101. 외국인투자법(2012, Pyidaungsu Hluttaw Law No. 21)과 미얀마 내국인 투자법(2013, Pyidaungsu Hluttaw Law No. 18)은 본 법에 의하여 폐지된다. 외국인투자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 따라 구성된 미얀마투자위원회는 그를 승계할 투자위원회에게 본 법에 따라 모든 책무와 책임이 위임되기 전까지 업무 수행을 계속한다.

²¹ 역자주. Anti-Corruption Law를 의미합니다.

본인은 미얀마 연방 공화국 헌법에 따라 이에 서명한다

Htin Kyaw

대통령

미얀마 연방 공화국